# W-3.3.5 영상검사 운영

● 영상검사 시행자 : 방사선사 면허 소지 원내 직원 연간 8점 보수교육이수

● 영상 판독자 : 영상의학과 전문의

- 응급환자를 위한 영상검사 제공 방법
- 1) OCS 처방 Emergency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처방시간으로부터 90 분 이내 촬영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2) 정규시간외 영상의학과 직원을 호출(Call)하여 90분 이내 촬영을 실시한다.
- 검사 부작용 예방 및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한 확인 절차
- 1) 이전 조영제 부작용 경험
- 2)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확인 : 임신, 제세동기, 메포민복용여부, 이전검사시 조영제 사용 여부

### ● 정도관리

구 분		내부정도관리	외부정도관리			
		일상점검	위탁점검	의료영상품질관		질병관리본부
				리원		장 지정검사
점검주기		매일		1년 (서류)	3년 (정밀)	3년(정기)
특 수 의	MRI	0	매월 및 격월	0	0	
료 장 비	CT	0	격월	0	0	0
그 외 영 상 장 비	MAMMO	0	6개월	0	0	0
	X-RAY	0	매년			0
	C-ARM	0	매년			0
	BMD (DEXA)	0	매년			0
	초음파 동맥경화, CR	0	필요시			

### TAT

충족비율 80% 달성 매분기 회의 통해 해당부서 관리 및 공유

비고	영상 검사	응급판독	정규판독		
판독	X-ray				
	CT				
	Joint MRI		48시간 이내 (단, 연휴 시에는 연휴가 끝난 다음날 까지)		
	판독 의뢰된 MRI	응급 판독 의			
	Arthrography	뢰 시 4시간			
군	TCD	이내			
	초음파 검사				
	기타 판독 의뢰된 영상				
	BMD				
	one Sequence MRI				
비판 독군	Double Sequence MRI	판독의뢰서에	판독의뢰서에 의해		
	Limited MRI				
	판독 의뢰 안 된 MRI	의해	필요시 판독		
	Discography	필요시 판독			
	동맥 경화도 검사				

### ● 이상검사 결과보고(CVR) 관리 절차

### 1) 대상

착추관내 혈종, 급성 뇌출혈, 급성 뇌경색, 감염성(원발성, 수술후)착추염, 기흥, ARDS(급성호흡곤란증후군,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), Spinal-Dural AVF(Arterio Venous Fistula),DVT(Deep Vein Thrombosis), 동맥류, 동맥박리, 폐동맥 혈전, 폐렴등 또한 주증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이 발생되어 진료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질환 발생시

# 2) 선정절차

적정진료위원회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협의를 거쳐 대상 선정

# ● 보고방법

- 1) 촬영실: 즉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유선으로 중간 보고를 한 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등 후속 조치한다.
- 2) 판독실: 구두(Verbal), 전화로 해당 주치의에게 알린다.

- 3) 윌스공지사항→ login/password 입력→ 영상의학과 폴더→ CVR 관리 대장 선택 → CVR 보고서 작성
- 보고된 검사결과가 변경될 경우
- 1) 구두(Verbal). 전화로 해당 주치의에게 검사결과의 변경사실을 알린다.
- 2) 윌스공지사항 → login/password 입력 → 영상의학과 폴더 → 검사결과 변경 대장선택 → 검사결과 변경 보고서 작성
- 이상검사결과보고(CVR:Critical Value Report)관리
- ① 혈종(척추관내 혈종), 급성 뇌출혈, 급성 뇌경색, 감염성(원발성, 수술 후) 척추염, 기흉, ARDS(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), Spinal-Dural AVF(Arterio-Venous Fistula), 또한 주증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 이 발생되어 진료 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질환 발생 시
- ② 보고방법: 구두(Verbal), 전화로 해당 주치의에게 알린다.
- ③ 보고내용: 보고를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이름, 등록번호, 일자, 시간, 검사결과, 보고자, 보고를 받는 자 등을 CVR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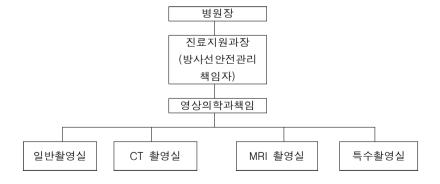
# W-3.3.7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

- ◆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공통 사항
- 방사선 노출 보호를 위한 활동
- 1) 매 분기마다 개인피폭선량계(TLD)를 교체 및 판독 실시
- 2) 연간 선량을 초과한 방사선 직원: 즉시 건강진단 재실시, 이상 징후 발견 시 6개월 후 재검사. 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실시
- 3) 보호구: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, 목 가리개, 생식선 가리개
- 4) 2회/년 점검
-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
- ① 기본진단: 직원정기검진 (매년)
- ② 정밀진단: 일반혈액검사와 문진시행 (2년마다)
- 방사선안전관리 보고체계

#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: 진료지원과장

개인피폭선량계(TLD) 상 과다 피폭이 확인되었을 경우 **진료지원과장**을 통해 병원장에게 보고한다.

### 방사선 안전관리 보고체계



# Q: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?

- 1) 방사선 방어 앞치마 착용
- 2) 가임여성 반드시 임신여부 확인(임산부 촬영 시 방사선 방어 앞치마 착용)
- 3) 촬영 시 반드시 출입문 닫고 촬영
- 4) 어린아이의 촬영 시 반드시 생식기를 차폐하고 촬영
- 5) 특수촬영실(C-Arm) 근무 직원은 반드시 Apron, Thyroid protector, 장갑. 안보호대 착용
- 환자 촬영 시 주의사항
- 1) 피검자에게 최적의 선량을 조사하여 검사
- 2) 조사범위 최소화
- 3) 적정한 조사
- 4) 재촬영의 최소화
- 5) 투시시간 및 영상획득 횟수를 최소화